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03

발의연월일 : 2026. 6. 12.

발 의 자 : 윤준병・이정문・박용갑
박민규・이성윤・임미애
서영석・이춘석・양부남
박희승・안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고, 인구, 소득, 산업・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고용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소멸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8개 시 ・ 군

·구 중 130개(57.0%)가 소멸위험지역이며, 그 중 57개(25.0%)는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나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및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산업과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 촉진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마다 지방투자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지방에 소재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시·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관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 등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제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기회발전특구에서 지역기반산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산업과 관련된 인·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지역기반산업이 해당 산업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기회발전특구에서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지역기반산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산업이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카.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파.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 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9조 및 제30조).

하.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법률 제 호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및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산업과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2. “지방”이란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포함한다.
3. “지방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

로 이전하는 경우

나.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지방의 생산 및 고용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자본을 투입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지방의 발전을 위한 투자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4. “지방기업”이란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이거나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지방근로자”란 지방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해당 지방기업이 소재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6.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11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7.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이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8.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의 발전과 기회발전특구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규제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특례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방투자 촉진 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5조(지방투자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10년마다 지방투자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지방투자 유치 기반 확충 및 재원 조달 방안

3. 대규모 지방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투자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방근로자의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투자촉진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투자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지방투자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지방투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지방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 중 토지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기업에 대한 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양성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한 조세 특례) ① 국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라 지방기업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소득세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1조(기회발전특구의 신청 및 지정) ① 지방에 소재하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7.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9. 그 밖에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투자를 하려는 기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충분한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지방근로자 등의 정주(定住)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5.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6.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회발전특구의 목적·명칭·위치 및 범위

2.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

5.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 계획

6.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의 특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

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지정변경 및 지정해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지정변경·지정해제를 위한 절차·방법과 지정해제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 등으로 지정·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지구의 지정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10.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13.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지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및 조세 특례) ①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조성하려는 자는 출자금 총액,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수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조세를 이연·감경할 수 있다.

제15조(기회발전특구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 및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회발전특구 내 연구·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실시를 지원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기회발전특구의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관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 등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의 부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규제특례 부여의 필요성과 적정성
2. 기회발전특구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3. 기회발전특구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규제특례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규제특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부여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회발전특구규제특례의 관리·감독 및 취소·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부여된 규제특례를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며,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 유효기간 내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규제특례의 신청 또는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여한 규제특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의 부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지방투자의 유치·촉진 지원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부여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4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지방기업 또는 지방근로자 등에게 이를 통보하고, 취소 또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규제특례의 적용을 즉시 중단하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기회발전특구에서 지역기반산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산업과 관련된 인·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회신받은 의견이 둘 이상의 중

앙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요구기간에 대하여는 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지역기반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인·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②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의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 및 실증사업자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과 유효기간, 관련된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내용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의 저해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④ 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기반산업의 활

성화를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실증사업자는 해당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실증특례의 취소) ①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실증특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20조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는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가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사업과 지역기반산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2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기회발전특구에서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지역기반산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기반산업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인·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인·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허가의 안전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기반산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와 별도로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⑩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에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4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의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11.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제30조(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⑤ 국가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양여, 대부,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기회발전특구 성과의 평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2조(의견진술과 청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를 하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시·도지사에

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규제특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실증특례를 취소하려는 경우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및 지방투자 지원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본다.